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서울특별시
- 나. 의안번호: 제1422호
- 다. 제출일자: 2023. 10. 16.
- 라. 회부일자: 2023. 10. 23.

2. 제 안 사 유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로서 '24. 5.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할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개 선정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나. 민간위탁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및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등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탁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처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다. 위탁사무 내용

-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반입 및 처리
- 소각, 환경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오염물질(배출가스, 폐수 등)을 설계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유지
- 고압증기 및 전력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기타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등

라. 시설개요

- 시설명: 마포자원회수시설
-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86(상암동)
- 부지면적: 58,435 m²
- 시설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750톤/일(250톤/일×3기)
- 처리권역: 5개 자치구(종로, 중, 서대문, 용산, 마포)

- 주 용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소각열 회수 자원화
- 주요장비: 소각설비, 소각재처리설비, 연소가스 처리설비 등

마. 위탁기간: 3년('24. 6. 1. ~ '27. 5. 31.)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회: '06.6.1.~'09.5.31. (3년, 한라산업개발 외 3개사)
- 2회: '09.6.1.~'12.5.31. (3년, 한라산업개발)
- 3회: '12.6.1.~'15.5.31. (3년, 한라산업개발)
- 4회: '15.6.1.~'18.5.31. (3년, 한라산업개발)
- 5회: '18.6.1.~'21.5.31. (3년, 삼중환경기술, 환경시설관리)
- 6차: '21.6.1.~'24.5.31. (3년, (주)한중산업개발)

바.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 후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23. 9. 25.)

사. 소요예산(비정산비 기준): 20,636백만원('24.6.~'27.5.)

(1차년도: 6,660백만원, 2차년도: 6,876백만원, 3차년도: 7,100백만원)

아. 기대효과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
- 전문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 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24.5.31.)로 인한 재위탁 (공개모집)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검토 의견

1)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

- 본 동의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1)에 그

1)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근거를 두고 있음.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가 누락되어 있는바,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동의안이 제출되도록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에게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청장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및 열생산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4>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3) 민간위탁 추진 절차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3년 9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²⁾**으로 심의한 바 있음.
-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공모)사업은 사전조사 →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시의회 보고(동의) → 시의회 의결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비고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재위탁/ 시설형	3년	적정	-

4) 민간위탁 성과보고서 개선 요청사항 요약

- **종합점수**: 78.31점을 획득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22.8.)의 재계약 기준점수인 75점 이상을 달성하였음³⁾. 동 시설은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자원회수시설과)(조직담당관-10427, '23.9.25.)

3) 강남(77.74점)과 노원(75.32점) 자원회수시설보다 높은 수준임.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사업의 효과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공공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과 성과보고서가 모호하게 작성되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 **사회적 가치 기여:**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및 공정안전관리(PSM)을 연간 2회 이상 교육하고 관리하는 등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업종 특성상 구성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 등의 물품 구매가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지역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마련 실적이 부족하므로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업 활동:** 대체로 양호하나, 소각로 설비의 노후화(18년)로 정비시간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과 설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함.
- **사업 성과:** 자체적인 목표 설정과 처리에 대한 재량이 거의 없고, 반입량에 따라 목표값과 처리 실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ESG와 같은 거시적 흐름에 관심을 두고 향후 자원회수 시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지도점검 이행 노력:** 관리대장 작성 미흡, 취업규칙 현행화 등 총 15건의 지적사항('21~'23 상반기)이 있었고 모두 조치하였으나, 매년 발생하는 지적사항들이 같은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매뉴얼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종합 의견(결론)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절차와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기여, 사업 활동 및 성과, 지도점검 이행 노력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지적된 문제를 조속히 시정 처리하고 이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참 고

예산 세부 산출내역 (마포자원회수시설)

□ **1차년도**

단위 : 원/년

구분		운영원가	구성비	비고	
용 역 원 가	인건비	직접인건비	4,579,156,563	68.8%	78명
		일용인건비	-	0.0%	
		소계	4,579,156,563	68.8%	
	고정 경비	인적보험료	450,083,175	6.8%	
		복리후생비	161,560,116	2.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43,896,448	0.7%	
		교육훈련비	8,806,772	0.1%	
		세금과공과	-	0.0%	
		회의비	2,600,000	0.0%	
		소모품비	14,983,630	0.2%	
		급량비	4,982,229	0.1%	
		여비교통비	6,300,000	0.1%	
		통신비	5,701,963	0.1%	
		교통보조비	10,926,545	0.2%	
		기타경비	770,908	0.0%	
		소계	710,611,786	10.7%	
	순원가		5,289,768,349	79.4%	인건비 + 경비
	일반관리비(9%)		476,079,151	7.1%	순원가 × 9%
	이윤(5%)		288,292,375	4.3%	(순원가+일비) × 5%
	운영비용		6,054,139,875	90.9%	순원가+일비+이윤
부가가치세		605,413,987	9.1%	운영비용 × 10%	
위탁 운영원가		6,659,553,862	100.0%	운영비용 + 부가가치세	
위탁 운영원가		6,659,553,000		백원단위 절사	

□ **총차년도**

(단위 : 백만원/년)

항 목	금 액	비 고
1차년도	6,660	
2차년도	6,876	인상율: 3.25% 적용
3차년도	7,100	인상율: 3.25% 적용
총 사업비(3년)	20,636	